

---

# 201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

---

2014. 3.

대구대학교 취업지원센터

# 201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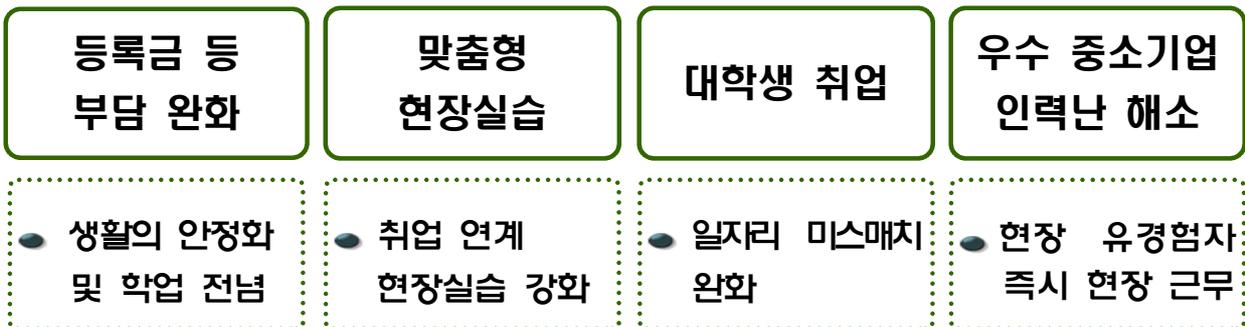
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취업활성화를 도모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『2014학년도 제1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』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## 1. 사업소개

현장실습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자가 해당 실습기관인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졸업 시까지 매학기 등록금 전액 및 취업준비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 장학사업

**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**

**등록금 부담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**



## 2. 지원대상 학생

- 가.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, 영주권자 제외)
- 나. 3,4학년 재학생 중 4주 이상의 국내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(2014-1학기) 내 이수예정자
- 다.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
- ※ 아래 현장실습 제외대상 학과는 신청대상이 아님. 단,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‘자격

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나.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방법

- (판단기업)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
  - ※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중소기업범위해설 > 중소기업 범위기준
- (확인서류)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청)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국세청),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(건강보험공단) 등 증빙서류 검토 후 확인

#### 다. 제외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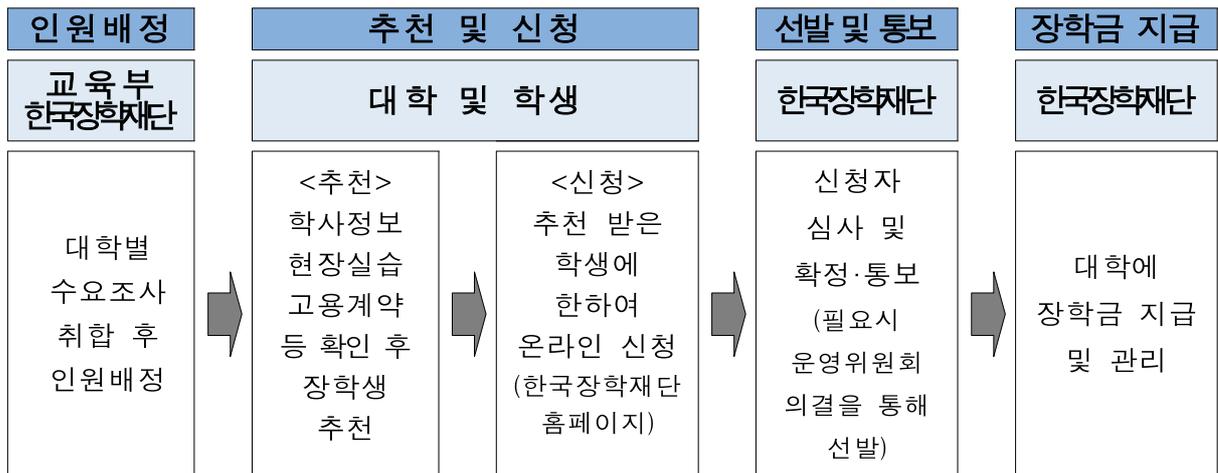
- 장학생 본인(창업) 및 직계존속이 대표(이사)인 중소기업, 소비·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

### 4. 장학생 선발

#### 가. 신규장학생

##### 1) 선발절차

한국장학재단은 대학별 인원배정 후, 대학이 추천한 학생을 종합심사하고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명단을 대학에 통보



##### 2) 선발유형

###### ○ 취업확정형

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이 예정(고용계약서 체결)된 자

○ **취업전제형**

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(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)

| 《 취업확정형 》 현장실습 기 이수자                 | 《 취업전제형 》 현장실습 미 이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① (기업)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과 고용계약 체결(붙임4 작성) | ① (대학) 고용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 확인 후 선발 대상자 추천                  |
| ② (대학)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고용이 체결된 선발 대상자 추천  | ② (학생) 취업전제 현장실습 신청(붙임5 작성) 후 장학금 신청(현장실습 종료 후 고용계약 체결) |
| ③ (학생) 장학생 의무사항 확인 후 장학금 신청          | ③ (재단) 추천자에 대한 자격조건 검증 후 장학생 선발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(재단) 대학 추천자에 대한 자격조건 검증 후 장학생 선발   | ④ (대학) 장학생 선정자에게 취업전제 현장실습 우선 배정 (해당학기 중)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(학생) 해당학기 내 현장실습 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⑥ (기업)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과 고용계약 체결(붙임4 작성)                    |

3) **현장실습과 고용계약 중소기업간 동일성**

○ (원칙)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동일해야 함

○ (예외)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체결에 실패한 부득이한 경우\* 추가 현장실습 없이 동일업종 타 중소기업\*\*에 취업 가능

\* 기업 파산·폐지, 해고, 직장 내 불화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

\*\* 동일업종 판단기준은 붙임1 업종별 분류기준에 따름

(예시: A 기계설비 제조 중소기업 현장실습 후 B 제조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로 현장실습을 진행할 필요 없음)

- (인정방법) 추가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않고 동일업종 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, 장학생은 취업예정기업 변경 보고서(붙임6) 작성 후 대학(원본)과 재단(업로드)에 제출

4) **자체선발 기준**

- 취업전제유형 보다 **취업확정유형**을 우선 선발

-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**잔여학기가 많은 자** 우선선발 등

- 최종 선발자 중 학적변동, 자진 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 발생 시 **동일학기 대체 후보자 중 신규장학생** 선발

## 나. 계속장학생

### ○ 계속지원기준

- (성적기준) 직전학기\*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

\* 대학 학사규정에 의거 한 학기 성적이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  
(대학별 학사규정에 따라 계절학기 성적 포함 가능)

백분위 점수 :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(예 : 69.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)

학점 포함

- (최소이수학점 기준) 각 대학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에 의함

- (지원 중단)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(등록금·취업준비장려금) 지원 중단

※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의무 있음

## 5. 장학금 지원

### 가. 지원 기간

○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

○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

### 나. 지원 금액

○ (등록금) 매학기 대학 등록금(수업료, 기성회비) 전액 지원

○ (취업준비장려금)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

※ 취업준비장려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

### 다. 지급 절차

○ 한국장학재단에서 소속대학으로 학기별 지급 후 소속대학이 장학생에게 개인지급

## 6. 직무기초교육

### 가. 직무기초교육 개요

○ 졸업 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업예정 기업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및 제반지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직·간접적 교육

- 중소기업의 재교육 부담완화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도모

○ 장학생은 취업예정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교육 총 40시간을 매학기 이수하여야 함

○ 희망사다리장학생 선정 후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 전까지 진행한 이수시간에 한하여 인정

## 나. 과정별 이수방법

### ○ 공통직무교육

- (의의)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직장예절, 윤리강령, 조직 내 소통 등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기본소양 온라인 교육
- (교육시간) 10시간
- (교육방법)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교육센터(<http://kosaf.sbc.or.kr>)에서 무료 수강

※ 장학생 선정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SMS로 교육시작을 통지함

### ○ 현장실무교육

- (의의) OJT 등의 기업실무 취득을 원칙으로 하나, 기업사정 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인정
  - (교육시간) 30시간
  - (교육방법) 취업예정 중소기업 OJT를 진행하거나, 취업예정 기업분야 교육과정(학업수강, 동영상 강의, 자격증 취득과정 등)을 개인적으로 이수
- \* 단, 개별 교육과정을 진행한 경우 30시간 이수에 대한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

### ○ 한국장학재단 주관 실무교육과정 추진(예정)

- 현장실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현장실무교육을 실시

※ 교육시기 및 참여방법 등 구체적 일정은 확정 후 각 대학으로 공문발송 예정

## 다. 이수보고서 제출

### 1) 제출방법

-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종료 후 이수보고서(붙임7)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[www.kosaf.go.kr](http://www.kosaf.go.kr))에 업로드

### 2) 증빙서류

- 공통직무교육 : 증빙서류 필요 없음(한국장학재단 일괄 확인)

#### ○ 현장실무교육

- (중소소기업 OJT) OJT 이수 확인서(붙임8) 첨부
  - (개별 교육과정) 교육과정 30시간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- \* 예시) 교육시간이 기재된 학원수강증, 동영상강의 수료증 등

## 라. 기타사항

### 1)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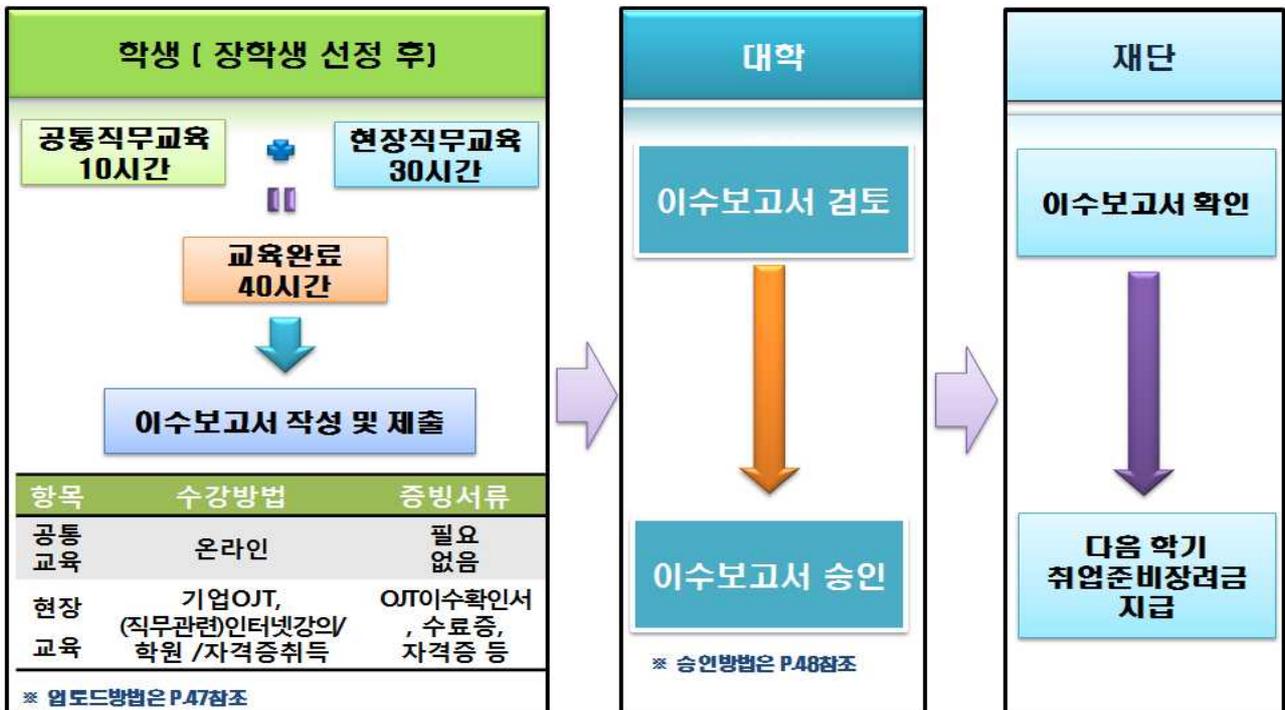
- 교육과정 40시간 미 이수 시, 다음 학기 취업준비장려금(200만원) 지원 중단. 단,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

※ 취업전제형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(별도 교육시간 이수 필요)

## 2) 교육과정 관리

- (장학생)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 후, 이수보고서(붙임7)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
- (기업) 중소기업 담당자는 장학생의 이수보고서를 토대로 교육수행 실적 확인
- (대학) 이수보고서 검토 후 이수확인 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

## 3) 직무기초교육 진행절차



## 7. 의무근무 및 환수규정

### 가. 의무근무기간 준수

-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
- (의무근무기간)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해당 중소기업에 의무 근무
  - ※ 의무근무기간 =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
- 졸업 후 대학원 등 진학은 불인정되며, 군입대·질병·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(증빙필요) 발생 시 유예가능

## 나.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환수규정

- (환수목적) 사업목적 정합성과 국고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
- (환수대상)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중 의무근무 미준수 자
- (환수범위) 수혜 받은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 전액
- (환수금액) 지급된 장학금액에 총 의무근무기간 중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
- (환수방법) 일시반환 또는 분할반환으로 확정된 환수금액 반환
- (환수절차) 대상자확인→환수금액산정→환수통보→환수방법결정 및 이의신청→환수실시
- (유예기간) 장학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중소기업 재취업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 인정

## 다. 장기근무 유도 인센티브

- 자기주도연수비 지원
  - 희망사다리장학생 중 장기근무자에게 직무심화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주도연수비\* 지원
    - \* 의무근무 종료보고 시점을 기산으로 초과근무 시 연간 5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
- 학자금대출자 이자 감면
  -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의무근무 초과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이자를 단계적\*으로 감면
    - \* 1년 초과(0.5%), 2년 초과(0.75%), 3년 초과(1.0%)
  - ※ 상기사항은 인센티브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하며, 당해 연도 가용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운영

## 8. 기타 운영사항

### 가.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환수

-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

|   |
|---|
| <p>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<br/>→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</p> <p>② 휴학·자퇴(단, 질병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제외), 제적 등 수락중단의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환수</p> <p>③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(등록금)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,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</p> <p>④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환수*</p> <p>* 금액: [(전문)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장학금] × (남은 의무근무기간 / 총 의무근무기간(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))</p> |
|---|

- 허위근로 등 부정사례 발견 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해당 중소기업 페널티 부여

### 나. 이중지원

-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
  -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
  - (등록금 범위)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(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)
- 이중지원 범위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종류 및 내용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학자금대출               | · 한국장학재단 학자금<br>- 든든학자금, 일반상환학자금(WEST 제외),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용자<br>· 타기관 학자금<br>-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 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 등   |
| 장학금                 | · 한국장학재단 장학금<br>-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 III 유형, 대통령과학장학금, 드림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국가연구장학금(인문사회계),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,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<br>· 정부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지자체, 민간장학재단, 기업,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<br>- 군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하이서울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 |
|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| ·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<br>·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<br>·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<br>·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(상사법인, 민사법인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)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<br>·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|
| 이중지원 예외사항           | ·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, 연구(보조)원 수당, 식비,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<br>※ 단,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<br>·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|

## 다. 학적변동

-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,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에 통보하고, 대학은 학적변동사항을 매학기별 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
-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,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**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**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
  - 단,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까지의 평균성적(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)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
    - ※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와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    - ※ 해외 인턴십의 경우, 학교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

## 라. 장학생 준수사항

-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,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(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즉시 보고)
-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의무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함
- 장학생은 취업 후 6개월 단위로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(온라인 업로드)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
- 장학생은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(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)
-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환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## 9. 신청기간 및 방법

가. 선발인원 : **4명**(취업확정형, 취업전제형 포함)

나. 신청마감 : **2014. 3. 25(화) 15:00**

다. 추천자 확정 통보 : 개별 통보

라. 신청방법 : 취업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

마. 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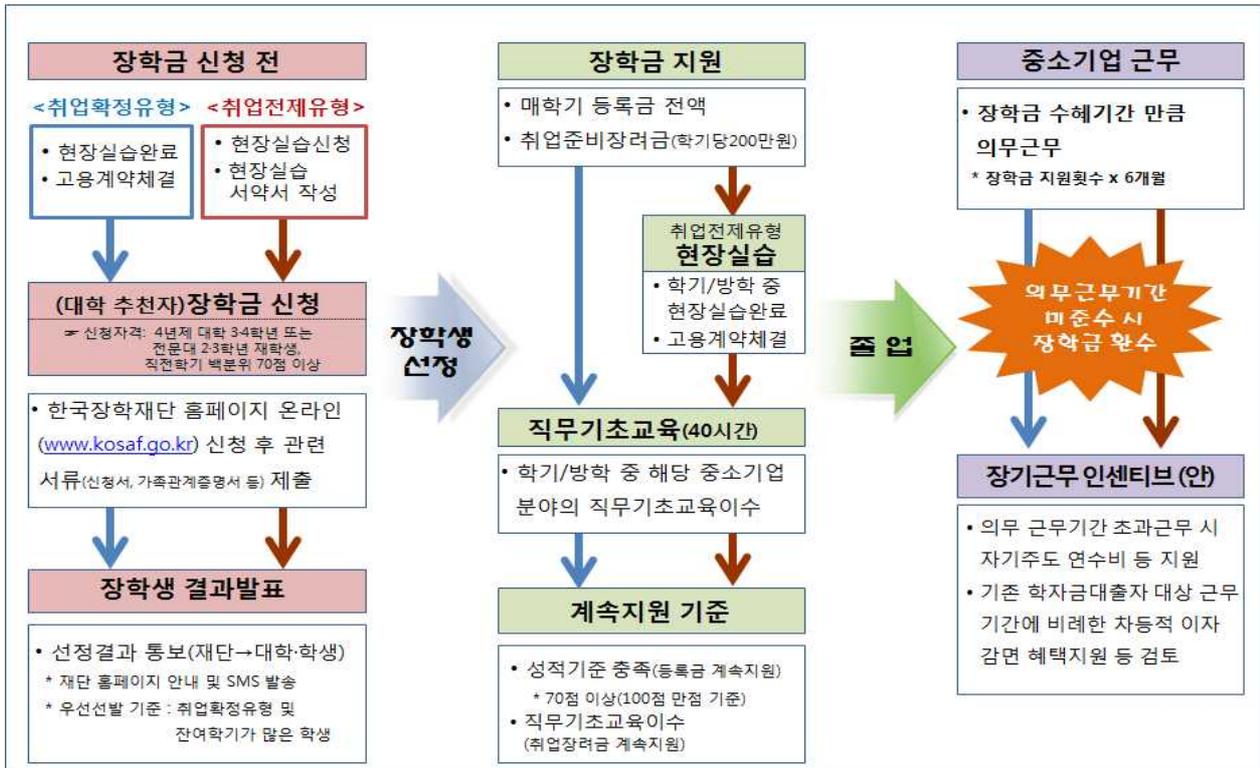
- 1) 취업확정유형 : 고용계약서 및 중소기업 확인용 서류(붙임3,4 참조)

2) 취업전제유형 :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(붙임5 참조)

3) 공통 : 가족관계증명서

바. 문의 : 취업지원센터(☎850-5612), 장학복지팀(☎850-5233)

## 10. 진행과정(학생)



# 2013년도 대비 변경 사항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13년  | '14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<p>현장실습<br/>진행<br/>중소기업<br/>동일성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현장실습(4주 이상+학점)을 진행한 중소기업에 반드시 취업</li> <li>· 실패 시, <u>타 중소기업에서 추가 현장실습(4주 이상) 진행</u> 후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</li> </ul>  <p>조건 1: 4주 이상<br/>조건 2: 학점 취득<br/>→ 현장실습 인정<br/>→ 동일 기업 고용계약<br/>실패 시<br/>→ 조건 4주 이상<br/>→ 신규 현장실습 인정<br/>→ 타 기업 고용계약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현장실습(4주 이상+학점)을 진행한 중소기업에 취업</li> <li>· 실패 시, <u>추가 현장실습 진행 없이 동일업종 타 중소기업 취업</u></li> </ul>  <p>조건 1: 4주 이상<br/>조건 2: 학점 취득<br/>→ 현장실습 인정<br/>→ 동일 기업 고용계약<br/>실패 시<br/>→ 생략<br/>→ 기존 현장실습 인정<br/>→ 동일업종 타 기업 고용계약</p> |
| <p>현장실무<br/>교육과정<br/>다양화</p>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취업예정 중소기업 OJT를 진행하거나,</li> <li>· 취업예정 기업분야 교육과정을 개인적 이수</li> <li>· (신설)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취업예정 중소기업 OJT를 진행하거나,</li> <li>· 취업예정 기업분야 교육과정을 개인적 이수하되,</li> <li>· 위 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<u>한국장학재단 주관 실무 교육과정 실시(예정)</u></li> </ul>   |

## 붙임 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

###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

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,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(제3조제1항제1호 관련)

| 해당 업종                  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    |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<br>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|
| 광업                      | B    |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<br>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|
|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| F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운수업                     | H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| J    |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<br>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|
|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 | N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| M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| Q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업, 임업 및 어업             | A    |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<br>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|
|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      | D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       | G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   | I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    | K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| R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| E    |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<br>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|
|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| P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  | S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       | L    |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<br>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|

비고: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희망사다리장학금 대학 추천서

|   |   |  |           |     |
|---|---|--|-----------|-----|
| 학생<br>정보  | 성명  |  | 대학        |     |
|   | 학과  |  | 학번        |     |
|   | 연락처   |  | 주민번호      |     |
| 기업<br>정보  | 기업명   |  | 대표자명      |     |
|   | 사업자<br>등록번호   |  | 연락처       |     |
|   | 업종  |  | 상시<br>근로자 | (명) |
| 추천<br>사유  | <p>위 학생은 20__년 __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취업예정임에도 불구하고, [ 기업 추천 사유 ](으)로 동 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으로 위 학생을 희망사다리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.</p> <p><i>※ 기업 추천사유 예시 : 업계 특성에 기인한 것, 발전성 있는 기업 등<br/>(작성 후 삭제)</i></p> |  |           |     |
| <p>20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>_____ 대학교 총장(직인)</p> <p>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</p> |   |  |           |     |

[중소기업 확인서]

【별지 제2호】

발급번호 세0027-2013-1466 호

**중기업 확인서**  
(공공기관 입찰 확인용)

업 체 명 :

사업자등록번호

대 표 자 명 :

주 소 :

유효 기 간 : 2013. 04. 01. - 2014. 03. 31.

위 업체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,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시행령 제2조(소상공인의 범위등)에 의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.

2013년 04월 22일

중소기업청



\*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와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의로 사용할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합니다.

★ 이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 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출력(2013-04-22 17:15,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)한 확인서입니다.

[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]

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1호서식] <개정 2013. 2. 23>

[전자신고채송본]

|          |    |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|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① 신고구분   |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|         | ① 귀속연월  | 2013년 01월 |
| 대월       | 연기 | 수납  | 영입      | ① 지급연월  | 2013년 06월 |
| 원천징수 의무자 |    | 법인명(상호)   | 대표자(성명) | 영입납부 여부 | 이 ( )     |
|          |    | 사업자(주민)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장소재지  | 사업자등록번호 | 이 ( )     |
|          |    |   |         | 전화번호    |           |
|          |    |   |         | 전자우편주소  |           |

1.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(단위 : 원)

| 소득자      | 소득구분      | 코드     | 원천징수명세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① 당월 조정 환급세액 | 납부세액            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소득지출 (과세, 면세, 환급, 보충세 포함) |             | 징수세액     |  |  |              | ② 소득세액 (가산세 포함) | ③ 정액소득세액 |  |
| ④ 인원     | ⑤ 총지출액    | ⑥ 소득세액 | ⑦ 퇴직소득세액                  | ⑧ 가산세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개인       | 간이세액      | A01    | 7                         | 78,484,300  | 731,970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경도회사      | A02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일용근로      | A03    | 6                         | 10,000,000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인양재산      | A04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| 99,782,015  | -775,780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가액계       | A10    | 18                        | 188,076,400 | -43,810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법인        | 영급계좌   | A21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| 그외     | A22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| 거장계    | A20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| 대영징수   | A25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| 인양재산   | A26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가액계      |           | A30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영급계좌     |           | A41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그외       |           | A42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거장계      |           | A40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인양계좌     |           | A48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비법인·비거주자 | 공직연금(해환)  | A45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인양재산      | A46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가액계       | A47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이자소득      | A50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배당소득      | A60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복합소득주요소득  | A69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비거주자 영도소득 | A70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합계        | A80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| 합계        | A99    | 18                        | 188,076,400 |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
2. 환급세액 조정 (단위 : 원)

| 원천징수명세액의 계산 |       | 당월 발생 환급세액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⑬ 조정대상 환급세액 (⑬-⑭+⑮-⑯) | ⑰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| ⑱ 차분 이월 환급세액 (⑱-⑲) | ⑳ 과다 징입액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⑭ 전월 미환급세액  | ⑮ 가액계 | ⑯ 차감항목 (⑰-⑱) | ⑲ 일반환급 | ⑳ 소득세상환 (공통 회사 등) | ㉑ 그밖의 환급세액 (공통 회사 등)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43,810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43,810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43,810   |

원천징수 의무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, 위 내용은 정확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임을 정확하게 책임임을 확인합니다.

2013년 07월 10일  
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(서명 또는 인)

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
표 해당란에 'O' 표시하십시오.

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부표(4-5쪽) | 종교(7쪽-8쪽) | 종교명세(10쪽) |
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
세무대리인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영입       |  |
| 사업자 등록번호 |  |
| 전화번호     |  |

국세청공인계좌신고  
※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
|      |  |
|------|--|
| 이입처  |  |
| 예금종류 |  |
| 계좌번호 |  |

210mm x 297mm(리선지 80g/㎡)

[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]

|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발급번호          | 2019C001E27551505 | 발급일자  | 2013-12-04 | 사업장관리번호 |
| 사업장명칭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현가입자수 | 19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|
| 사용자성명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|
| 사업장 소재지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

|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납부현황 |     |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|
| 구분              | 인수  | 금액(원)       |    |
| 납부할 금액          | 202 | 883,724,480 |    |
| 납부한 금액          | 202 | 883,724,480 |    |
| 납부하지 않은 금액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|

| 가입기간(년.월-년.월) |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납부현황 |      |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     | 현가입기간(년.월-년.월)  | 납부인수 | 납부하지 않은 금액 |    |
| 1997.01 - 현재  | 1997.01-2013.10 | 완전   | 0          |    |


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

**국민연금공단 이사**

※ 이 증명은 '전자결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추진에 관한법률'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기관의 전자결부인증을 인정된 증명입니다.  
 ※ 이 증명서를 접수하는 기관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진위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.  
 ※ <http://lpa.bizmate.com/oridoc> 에서 증명서의 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 
 ※ 이 증명서는 소액확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, 해당사업장 사용자의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한 처리이기 때문에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, '\*' 표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청인(사용자)의 요청에 따라 표시되었습니다.



## 붙임 4 고용계약서

|   |     |         |
|---|-----|---------|
| <b>고 용 계 약 서</b>  |     |         |
| _____ (이하 “갑” 이라 함)과(와) _____ (이하 “을” 이라 함)은(는)<br>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. |     |         |
| 사용자(갑)  | 업체명 | 전화번호    |
|   | 주소  |         |
|   | 대표자 | 사업자등록번호 |
| 취업자(을)  | 성명  | 주민등록번호  |
|   | 주소  |         |

| 구 | 분        | 내 용   |
|---|----------|---|
| 1 | 근로시작일    | _____ 년 ____ 월 ____ 일부터   |
| 2 | 근무장소     |   |
| 3 | 업무의 내용   |   |
| 4 | 소정근로시간   | _____ 시 _____ 분부터 _____ 시 _____ 분까지<br>(※ 휴게시간 : _____ 시 _____ 분 ~ _____ 시 _____ 분 )  |
| 5 | 근무일/휴일   | 매주 _____ 일(또는 매일단위) 근무/ 주휴일 매주 _____ 요일   |
| 6 | 임 금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월(일, 시간)급 : _____ 원<br/>(※ 임금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“회사 내규에 따름” 으로 기재가능)</li> <li>○ 상여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있음 ( ) _____ 원</li> <li>- 없음 ( )</li> </ul> </li> <li>○ 기타급여(제수당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있음 ( ) _____ 원, _____ 원</li> <li>- 없음 ( )</li> </ul> </li> <li>○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_____ 일(휴일인 경우는 전일 지급)</li> <li>○ 지급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을에게 직접지급 ( )</li> <li>- 예금통장에 입금 ( )</li> </ul> </li> </ul> |
| 7 | 연차유급휴가   | ○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 |
| 8 | 고용계약서 교부 | ○ “갑” 은 고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“을” 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“을” 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   |
| 9 | 기 타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</li> <li>○ 본 계약서는 교육부(한국장학재단)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·환수 및 의무기간근무를 위해 작성되는 것인바, 고용주는 계약서 작성에 있어 신중을 요함</li> </ul>  |

※ 본 계약은 상기 근로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. (중소기업 확인용 서류 첨부 필)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|     |       |      |
|-----|-------|------|
| (갑) | 사업체명  |      |
|     | 주 소   | (전화) |
|     | 대 표 자 | (서명) |
| (을) | 대 학 명 |      |
|     | 연 락 처 |      |
|     | 성 명   | (서명) |

한 국 장 학 재 단 귀 중





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

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
| 장학생  | 소 속         | 대학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학과(전공) |      |
|  | 성 명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 년             |        | 학 번  |
|  | e - m a i l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휴대전화   |      |
|  | 이수기간        | 2013.0.0 ~ 2013.0.0      |                 | 총 이수시간 |      |
| 중소기업   | 기업명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대표자명   |      |
|  | 사업자등록번호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업 종    |      |
|  | 담당자         |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|      |
|  |             | e - m a i l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주소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이수 교육  | 구분          | 교육과정                     | 교육기관            | 이수시간   | 증빙   |
|  | 공통직무교육      | 공통교육                     | 한국장학재단          | 10     | 재단검증 |
|  | 현장실무교육      | <i>OJT, 자격증, 학업 수강 등</i> | <i>이수 교육기관명</i> |        | 첨부   |
| <p>본인은 직무기초교육 이수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>신청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학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과(전공)    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</p> <p>확인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○기업 담당자    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한국장학재단    귀중</b></p>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
## OJT 이수확인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|
| 장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속    |    | 대학   |      | 학과(전공)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    |    | 학 번  |      | 서명(인)        |  |
|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명    |    | 담당자  |      | 서명(인)        |  |
| OJT<br>이수내용                     | 순번     | 날짜 | 이수시간 | 교육내용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이수시간 |    |      |      | <del> </del> |  |
| 위 학생은 본 기업에서 OJT를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
| <b>한국장학재단    귀중</b>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|